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은 육군의 임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훈련 부대로서, 동시 훈련 가능한 부대 규모가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대되는 등 그 임무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사단급 지휘 통제가 필요하여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의 설치와 임무, 단장의 임명, 참모 부서와 부대의 설치, 교육훈련 과정, 외국군 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정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정령(안)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과훈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단장)

- ① 과훈단에 단장을 둔다.
- ② 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 ③ 단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과훈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

- ① 과훈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 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교육훈련 과정 등) 과훈단의 교육훈련 과정·기간, 기타 과훈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과훈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군·공군·해병대 장병 교육훈련)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

을 받아 과훈단에서 해군·공군·해병대 장병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외국군 훈련) 육군참모총장은 외국정부(군사당국을 포함한다.)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훈단에서 외국군 장병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00000호, 2000.00.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과학화전투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과훈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제2조(단장) ① 과훈단에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③ 단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과훈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신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 ① 과훈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 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제4조(교육훈련 과정 등) 과훈단의 교육훈련 과정·기간, 기타 과훈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제5조(정원) 과훈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해군·공군·해병대 장병 교육훈련)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훈단에서 해군·공군·해병대 장병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제7조(외국군 훈련) 육군참모총장은 외국정부(군사당국을 포함한다.)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훈단에서 외국군 장병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